

남양주시태권도협회 임원의 결격사유

1. 남양주시 지역거주(주소나 거소, 사업장, 직장)인이 아닌 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사람.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.
 - 가. 폭력 및 성폭력등 성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.
 - 나. 승부조작, 판파판정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.
 -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.
5. 국회의원
6. 사회적 물의, 남양주시태권도협회와 남양주시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.
7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.
 - 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③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 - ④ 남양주시태권도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.

2025년 1월 16일

남양주시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

